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32

발의연월일: 2025. 5. 15.

발 의 자:김소희·최은석·박덕흠

김상훈 · 김선교 · 조경태

우재준 • 고동진 • 김예지

유용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면서,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.

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, 해당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가 일상화되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다 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1항 단서 삭제 및 제11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	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
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	
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관할 구	
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	
처리하여야 한다. <u>다만, 환경부</u>	<u><단서 삭</u>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	<u>제></u>
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	
<u>장・군수・구청장이</u> 지정하는	
지역은 제외한다.	
② ~ ⑩ (생 략)	② ~ ⑩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①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생활
	폐기물의 수집・운반・보관 및
	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
	<u>수 있다.</u>